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홍이유(개명전:홍은영) 소유물건(2024타경119790)
평가서번호	가온 2412-09-4053
의 뢰 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보무
의 뢰 번 호	2024타경11979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 산 경 남 지 사

TEL:(052) 274-8811 FAX:(052) 274-8812

제 출 문

□ 본인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신의를 좇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았습니다.

□ 본인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인은 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보수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금품·향응 및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온감정평가법인

2412-09-4053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김연수 (인)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지사장 김 연 수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칠천오백만원정 (₩75,000,000.-)**			
의 뢰 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보무	감정평가 목적	경매	
채 무 자	--	제 출 처	경매3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홍이유(개명전:홍은영) (2024타경119790)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4.12.23	2024.12.23	2024.12.24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아파트)	1개호	구분건물 (아파트) 이 하 여 백	1개호	--	75,000,000
	합 계					**₩75,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유한국민아파트 5층 501호)로서, 울산지방법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개요

2.1 총괄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table>
<tr><td>소재지
(도로명
주소)</td><td colspan="4">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78-4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6길 40)</td></tr>
<tr><td>건물명</td><td colspan="4">유한국민아파트 5층 501호</td></tr>
<tr><td>주용도</td><td colspan="3">아파트</td><td rowspan="6"> </td></tr>
<tr><td>용도지역</td><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지목</td><td>대</td></tr>
<tr><td>주구조</td><td>철근콘크리트조</td><td>사용승인일</td><td>1983.01.04</td></tr>
<tr><td rowspan="2">건물규모</td><td>총 동수</td><td>해당동 층수</td><td>총 세대수</td></tr>
<tr><td>1</td><td>지상5층</td><td>40세대</td></tr>
<tr><td rowspan="2">면적</td><td colspan="2">대지면적(㎡)</td><td>연면적(㎡)</td></tr>
<tr><td colspan="2">1,681.1</td><td>2,094.8</td></tr>
<tr><td>비고</td><td colspan="3">-</td></tr>
</table>

2.2 대상개요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권면적 (㎡)	전용률 (%)	용도	
일련번호	층/호수						공부	현황
가	5/501	46.13	6.24	52.37	42.0275	88.08%	아파트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3.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4.12.23 일로 하였음.

3.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12.23 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였음.

4. 기준가치

4.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4.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5. 감정평가조건

5.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6. 감정평가방법

6.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제 이론에 의거 감정평가하였음.

6.2 일괄감정평가 원칙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이 원칙임.

6.3 감정평가액의 합리성 검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함.

대상물건의 경우,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합리적 산정이 곤란하여 적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임대수익의 파악이 쉽지 않고, 수익 또한 일정하지 않아 이의 적용은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방식에 의한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은 생략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7.1 임대관계

미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2 기타

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ㅇ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통해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2. 가격 참고자료

2.1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 [울산광역시 동구]

2.1.1 인근 거래사례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동/ 층/호수	전유면적(㎡)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a	전하동 000-0 유한국민아파트	0/000	46.13	1,409,061	65,000,000	2024.06.29 (1983.01.04)
b	전하동 000-0 유한국민아파트	0/000	46.13	1,647,518	76,000,000	2023.12.11 (1983.01.04)
c	전하동 000-0 유한국민아파트	0/000	46.13	2,167,787	100,000,000	2023.04.24 (1983.01.04)
d	전하동 000-0 유한국민아파트	0/000	46.13	2,167,787	100,000,000	2023.04.10 (1983.01.04)
e	전하동 0000 유한국민아파트	0/000	46.13	2,037,719	94,000,000	2021.01.24 (1983.01.04)
f	전하동 000 전하국민아파트	00/ 0/000	53.5	1,308,411	70,000,000	2024.06.04 (1983.01.04)
g	전하동 000 전하국민아파트	00/ 0/000	53.5	1,308,411	70,000,000	2024.05.16 (1983.01.04)
h	전하동 000-0 삼창파크아파트	00/ 0/000	54.71	1,553,646	85,000,000	2024.01.10 (1983.03.17)
i	전하동 000-0 협동아파트	0/000	60.06	1,332,001	80,000,000	2024.08.19 (1984.01.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1.2 인근 감정평가전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동/ 층/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 (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1	전하동 000 전하국민아파트	00/ 0/000	53.5	1,775,701	95,000,000	2023.10.25 (1983.01.04)	경매
2	전하동 000 전하국민아파트	00/ 0/000	53.5	1,495,327	80,000,000	2023.08.25 (1983.01.04)	일반거래 (시가참고)
3	전하동 000 전하국민아파트	00/ 0/000	53.5	1,813,084	97,000,000	2022.04.19 (1983.01.04)	경매
4	일산동 000-0 통칭 전하국민아파트 & 태양아파트	00/ 0/000	56.1	1,176,471	66,000,000	2024.10.14 (1983.01.04)	경매

2.2 시세수준

구분	시세수준(원/㎡)	비고
본건 유사 물건	1,500,000 ~ 1,700,000	전유면적기준
의 견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물건의 시세수준은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층별, 위치별, 전유면적의 크기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남.		

2.3 경매통계분석

(출처: 부동산태인)

구분	용도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건수
최근 1년간 평균	아파트	78.28	76.54	63	85.55	82.32	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 선정

본건 건물과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선정하되, 본건은 아파트로서, 용도, 층별효용 및 위치별효용 등이 유사한 <거래사례 b>를 본건에 적용할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b	전하동 000-0 유한국민아파트	0/000	46.13	1,647,518	76,000,000	2023.12.11 (1983.01.04)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됨(1.000).

5. 시점수정

5.1 매매가격지수(아파트) (울산광역시 동구)

(출처: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기간	시점수정치	비고
2023.12.11~2024.12.23	0.98899	아파트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23.12.11~24.12.23) 거래시점 : 2023.12.11, 2023년11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4.12.23, 2024년11월 지수를 적용 함 2023.12.11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3년11월) : 90.8 2024.12.23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11월) : 89.8 시점수정치 : 89.8/90.8≒0.98899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2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울산광역시 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해당 월의 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직전 월의 가격지수를 적용함.(0.98899)

6. 사정보정

6.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주거용)

가치형성요인	
항 목	세부항목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 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환가성, 안정성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구분		단지 외부요인	단지 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일련번호	층/호수					
가	5/501	1.00	1.00	1.00	1.00	1.000

의 견	
단지 외부요인	본건 일련번호(가)는 거래사례(b)와 동일 "유한국민아파트" 내에 위치하여 외부요인은 대체로 유사함.
단지 내부요인	본건 일련번호(가)는 거래사례(b)와 동일 "유한국민아파트" 내에 위치하여 내부요인은 대체로 유사함.
호별요인	본건 일련번호(가)는 거래사례(b)와 호별요인은 대체로 유사함.
기타요인	본건 일련번호(가)는 거래사례(b)와 비교하여 기타요인에서 유사함.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산출가액

구분		거래사례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일련번호	층/호수						
가	5/501	1,647,518	1.000	0.98899	1.000	1,629,379	1,629,000

※ 산정단가는 백원 단위 미만에서 버림하여 결정단가를 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결정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전유면적 (㎡)	전유면적 기준결정단가 (원/㎡)	산출가액(원)	감정평가액 (원)
일련번호	층/호수				
가	5/501	46.13	1,629,000	75,145,770	75,000,000
합 계					75,000,000

※ 산출가액 십만 단위에서 버림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및 상기 참고가격 자료(시세수준, 감정평가전례, 통계분석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합리성이 지지되므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412-09-4053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도로명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6길 40	678-4 유한국민 아파트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1층 2층 3층 4층	 418.96 418.96 418.96 418.96			
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78-4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81.1			
가				(내) 철근콘크리트조 5층 501호 1.소유권 대지권	46.13 1 ---- 40	46.13 42.0275	75,000,000 배분내역 토 지 : 45,000,000 건 물 : 30,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6.24㎡ 포함)
	합 계						₩75,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유한국민아파트 5층 501호이며,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5층 5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칠 마감,
내벽: 벽지바름,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2, 거실, 주방, 화장실1, 보일러실, 발코니 등)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여, "아파트 건부지" 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 등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12)(명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12)(일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 상.

나. 기타
없 음.

광역위치도

N

S

소재지 및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78-4 유한국민아파트 5층 5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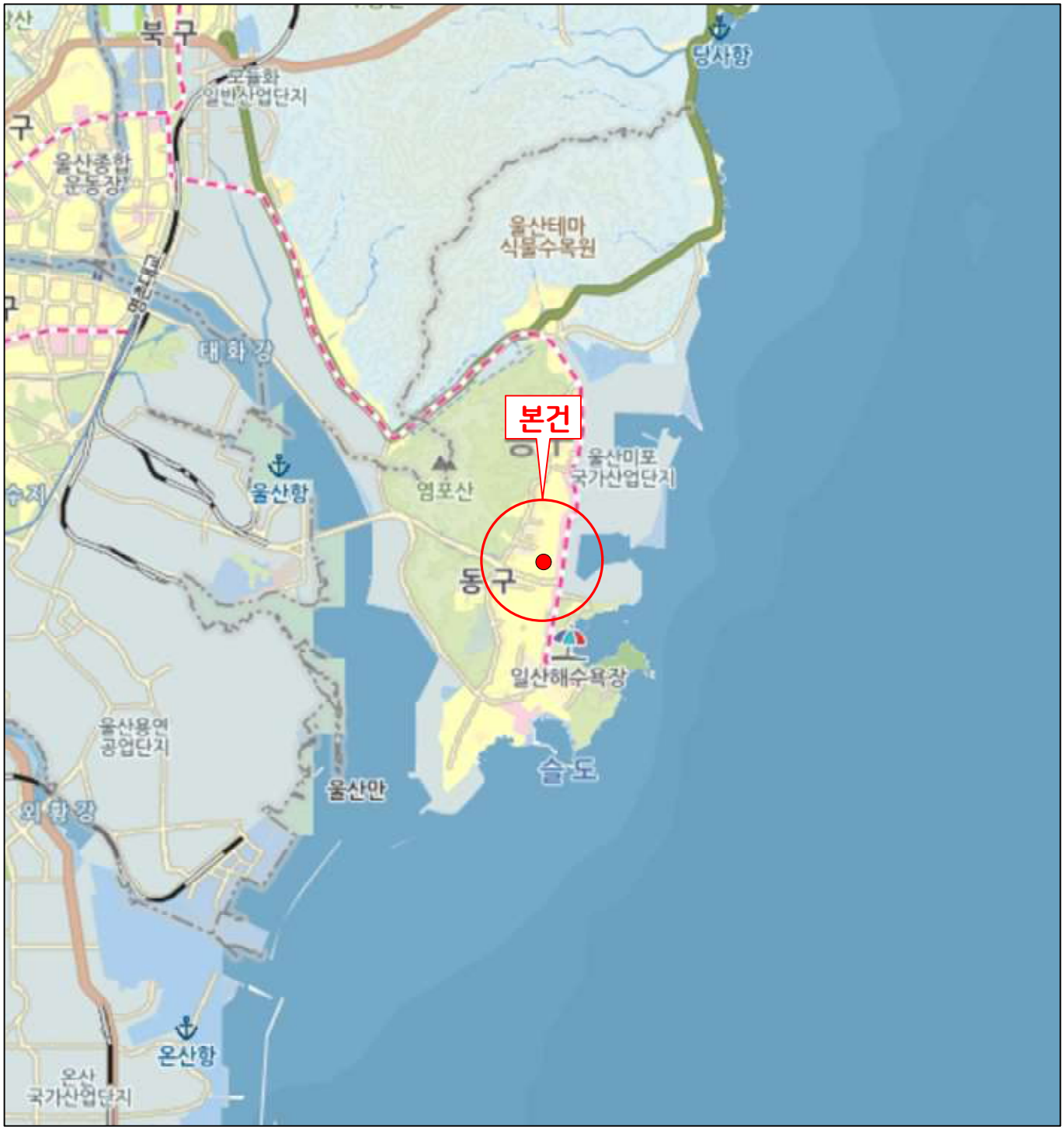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N

S

소재지 및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78-4 유한국민아파트 5층 5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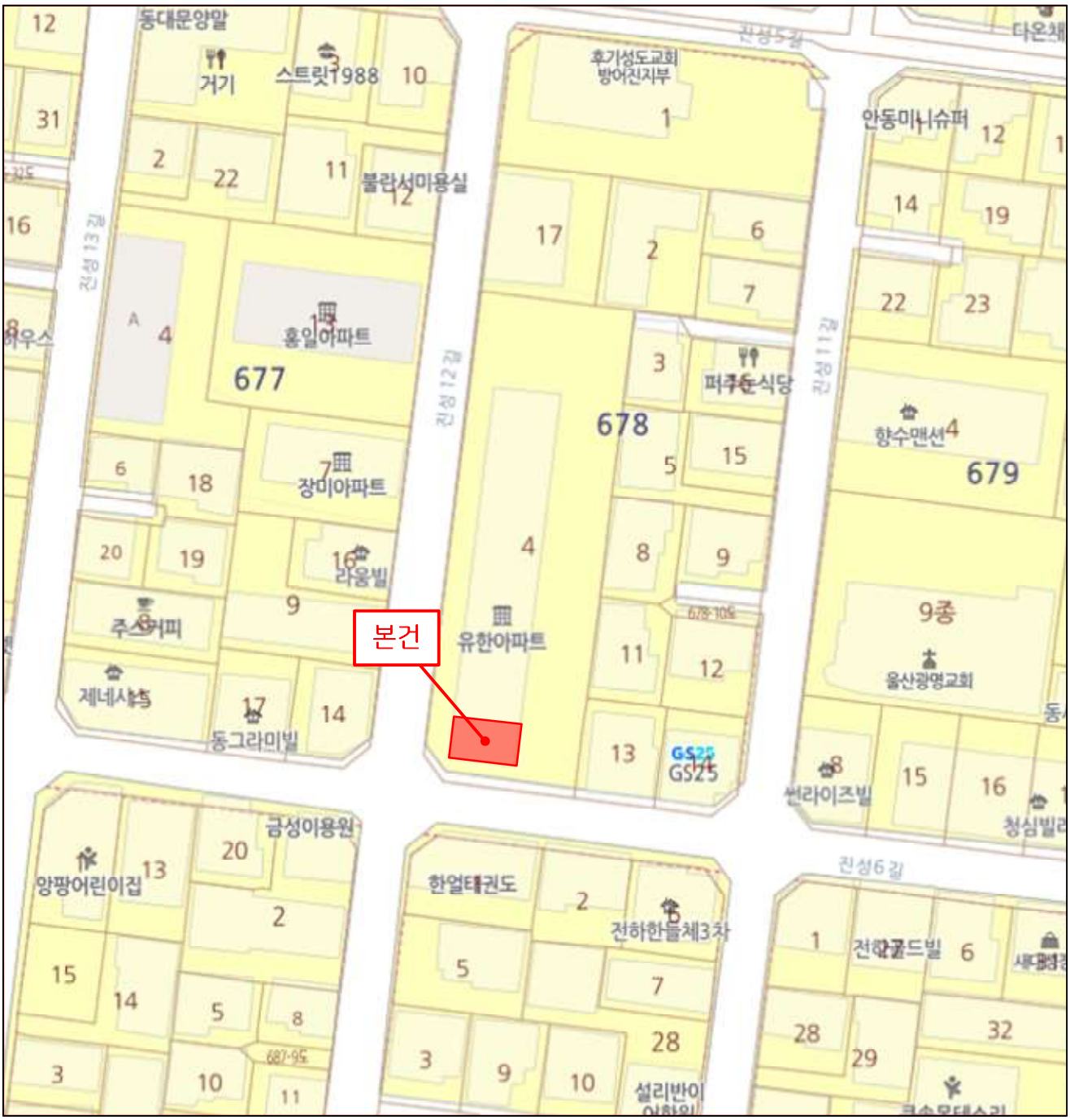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S = None Scale

[5층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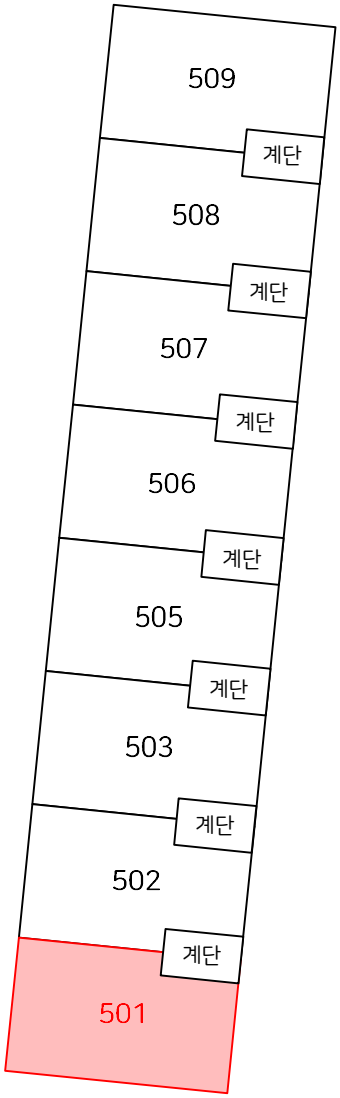

본건(유한국민아파트 5층 501호)

(내부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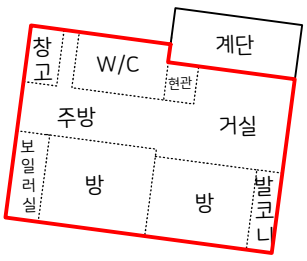

2412-09-4053

사 진 용 지

본건(유한국민아파트) 전경

본건(유한국민아파트) 전경

본건(유한국민아파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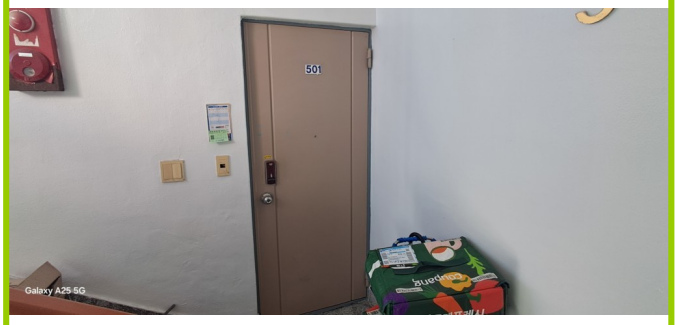

본건(501호) 전경

㈜가온감정평가법인
GAON Appraisal Company Limited

수　　신 :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보무

참　　조 :

제　　목 :　**감 정 평 가 회 보**

1. (주)가온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4. 12. 11. 자 귀 제 2024타경119790 로 의뢰하신 『홍이유(개명전:홍은영) 소유물건(2024타경119790)』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별첨과 같이 회보합니다.

3. 우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따라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 박윤미 052-274-8811)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 성명, 유무선 전화번호, E-mail

별　　첨 : 1. 감 정 평 가 서　　1부
2. 수수료 청구서　　1부　　끝.

㈜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지사장　김 연 수

시행일자 :　가온 2412-09-4053　(2024. 12. 24.)

우)44616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 601호 (무거동, 현빌딩 6층 601호) / http://www.igaon.co.kr
TEL.(052) 274-8811 FAX.(052) 274-8812 E-MAIL.gaon09@kapaland.co.kr

수 수 료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가온 2412-09-4053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보무 귀하

2024. 12. 24

사십오만삼천이백원정 (₩453,200.-)

2024. 12. 11 일자 귀 제『2024타경119790』호로 의뢰하신『홍이유(개명전:홍은영) 소유물건(2024타경119790)』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 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 구 내 역 -

과 목		금 액	비 고
감정평가수수료		290,000	(75,000,000×(11/10,000)+145,000)×0.7 ≒290,000
실비	여 비	106,4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임대차 조사비	—	
	공부발급비	2,000	
	기타 실비	4,000	
	특별용역비	—	
	소 계	122,400.-	
합 계(공급가액)		**₩412,000.-**	※ 1,000원미만절사
부가가치세(세 액)		₩41,200.-	
총 계		**₩453,2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453,200.-**	

※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2412-4053) 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입금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 좌 번 호 ▣

◈ 신한은행 100-022-274603 [예금주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주|가온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지사장 김 연 수

(Tel. : (052) 274-8811 Fax. : (052) 274-8812)

[공급자(사업자) 등록번호 : 610-85-33794]